

불법우의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



가두캠페인(서울특별시)



경기도



인천광역시



충청북도



광주광역시



경상북도



부산광역시



단체캠페인세미나(강원도)

우의광고물의 정의, 종류, 허가 및 신고절차

우의광고물의 정의

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,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, 디지털광고물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

우의광고물의 종류

1	벽면 이용 간판
2	돌출간판
3	공연간판
4	옥상간판
5	지주 이용 간판
6	입간판
7	현수막
8	애드벌론
9	벽보
10	전단
11	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
12	교통시설 이용 광고물
13	교통수단 이용 광고물
14	선전탑
15	아치광고물
16	창문 이용 광고물

우의광고물의 허가, 신고절차

- 허가자 : 특별자치시 · 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
- 허가신고신청 ▶ 접수 ▶ 검토 ▶ 결재 ▶ 허가신고(증) 교부

▶ 관련부서협의

아름다운 광고물이 아름다운 도시를

만듭니다.



행정자치부



불법광고물 근절하는 시민의모임
Citizens coalition for Extermination Unlawful Advertisement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

목적 **법제1조**

- 옥외광고물의 표시·설치 등에 관한 사항
-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
 -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 -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

금지광고물등 **법제5조**

-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
-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
-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
- 사행산업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
-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진인하게 표현하는 내용
-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
- 청소년의 보호·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
-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
- 다른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

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**영제9장 제 36조**

- 벽면 이용 간판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,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. 다만, 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로로 표시한것은 제외
- 돌출간판(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, 면적 1㎡이상)
- 옥상간판(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표시 하거나, 상단높이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4m미만인 불링핀 모형은 제외)
- 지주이용간판(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상),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,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, 현수막 지정게시시설
- 애드벌룬(높이 4m이상 게시시설 이용 설치)
-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
-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

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**영제2장 제4조**

- 벽면 이용 간판중 한번의 길이가 10m이상인 간판과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등에 설치한 타사광고 간판
- 돌출간판(의로기관·약국, 이용·미용업소표지와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, 한 면의 면적이 1㎡미만인 간판 제외)
-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
-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
- 옥상간판, 애드벌룬,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
- 교통시설이용 광고물(지하도, 지하철역, 철도역, 공항, 항만의 시설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)
- 교통수단이용 광고물(사업용자동차 및 사업용화물차, 비행선 해당)
- 선전탑, 아치광고물
- 전기(전광류, 네온류, 디지털홀로그램, 전자빔 등)를 이용한 모든 디지털광고물
-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
- 면적이 30㎡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

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**영제2장 제5조**

- 벽면 이용 간판중 면적 5㎡ 이상간판, 건물4층 이상층 표시간판 (허가대상광고물 및 건물출입구 양옆 세로표시 제외)
- 공연간판(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제외)
- 돌출간판(의로기관·약국, 이용·미용업소표지와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, 한 면의 면적이 1㎡미만인 간판)
-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
-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
-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(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외)
-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(면적이 30㎡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외)

벌칙 규정 **법제18조**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제외)
- 디지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제외)
- 광고물의 금지, 제한규정에 위반하거나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
-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경우

500만원 이하의 벌금

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(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제외)

과태료 규정 **법제20조**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
-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, 표시한 경우
- 옥외광고업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- 광고물 실명제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등의 표시를 안하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
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광고물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